

# 포 향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18호

2009. 3. 3(화)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포 향 시

### ◀ 입법예고 ▶

○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(제2009 - 348호) ..... 2

### ◀ 공 고 ▶

○공 고(제2009-342호) ..... 8

○공 인 공 고..... 9

회								
람								

# 입법예고

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. 2. 26

포항시 공고 제2009 - 348호

##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5조 내지 8조)

- 구 성 :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
- 기 능 : 심의기능
  -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  -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임 기 :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(1차에 한하여)

마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바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**3. 관련근거**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9. 3.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새마을봉사과 광고물 담당, 주소 :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, 전화 270-2363, FAX 270-2460, 이메일 : gihee9094@korea.kr)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 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**5. 기 타**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재원)** ①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항시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적립금
3. 국·도비 보조금
4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

② 제1항 2호의 적립금에 있어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2. 경관개선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**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·관리하며, 「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- 1. 기획예산과장,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(당연임명직)
  - 2.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(위촉직)
  - 3.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
-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기금운용계획안
- 2. 기금결산보고서안
-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(간사 및 수당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이 된다.
-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기금운용 계획)**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 - 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- 3.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회계공무원)**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- 1. 기금운용관 :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
- 2. 기금분임운용관 :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
- 3. 기금출납원 : 옥외광고업무 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기금결산)**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-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-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**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포항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포항시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년 2월 25일

포항시 공고 제 2009-342호

공 고

- 다 음 -

계	내국인	재외국민	외국인	비 고
390,778	390,477	199	102	

※ 내국인 : 2008.12.31 현재 포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
재외국민 : 2008.12.31 현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중 19세 이상

외국인 : 2008.12.31 현재 포항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출입국 관리법상 영주 자격 자

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  
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. 3. 3.

포항시공고

공 인 공 고

1.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: 2009. 3. 3.
2. 등록 및 폐기사유 : 인증기 교체로 인한 개각 등
3. 신조 공인명 및 인영 : 붙임 1
4. 폐기 공인명 및 인영 : 붙임 2

붙임 1. 신조공인

신 조 공 인			
공인명 및 모형	인 영	공인명 및 모형	인 영
제증명 포항시남구 청림동장인 발급용		제증명 송라면 장의인 발급용	
한글전서체 2.1cm 정방형		한글전서체 2.1cm 정방형	

붙임 2. 폐기공인

폐 기 공 인			
공인명 및 모형	인 영	공인명 및 모형	인 영
제증명 포항시남구 청림동장인 발급용		제증명 송라면 장의인 발급용	
한글전서체 2.1cm 정방형		한글전서체 2.1cm 정방형	
FAX민원 송라면 장의인용 발급용			
한글전서체 2.1cm 정방형			